

확 인 결 과 통 지 서

사 업 장 명	(주)에스에프에이 / 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NGP 자동창고 증축공사		
업 종	일반건설공사(갑)	전화 : 010-5534-0991	팩스 : 031-379-6479(본사)
소 재 지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		
사 업 주 성 명	김 영 민		
대 상 공 사 종 류	■ 높이 31m 이상		

◆ 핵심타킷(√체크) : 1순위(2개월 이내), 2순위(3개월 이내), 3순위(4개월 이내)

확 인 기 간	2022. 8. 3. (1 일간)				
확인자	소속(공 단)	건설안전부	직 위	과 장	성 명 전 미리
입회자	소속(사업장)	(주)에스에프에이	직 위	현장소장	성 명 김경석

확인 결과 요약
 당 현장은 확인한 현재 광역 약 93.5%로 사전 등 장외공임 확인인 등재 과사항 없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함 상태임. 개인안전구 자. 조용지도 및 국가기 구가 운영인할 예방책(문. 구. 등. 등) 등등 철저키 하의 중공 시까지 대체예방키 많았노 개략키 바랍니다.
 ※ 개선결과 제출기한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적정함(불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22년 8월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담당자	차장	부장	

첨부서류 개선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인터넷 : www.kosha.or.kr/사이버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기재서

사업장 관리번호	609-81-35227-6	사업장 개시번호	921-11-1353377
발 주 자	(주)케이티앤지	근 로 자 수	12 명
공 사 금 액	9,270 백만원	공 정 률	93.5 %
공 사 시 작 일	2021. 10. 1.	공 사 종 료 일	2022. 8. 31.
공 사 규 모	랙 설치 (높이 38.3m)		
재 해 발생 현황	당 해 연 도	재해자수: - 명	사망자수: - 명
	누 계	재해자수: - 명	사망자수: - 명
확 인 시 작 업 공 종	사격 등		
확 인 시 대형사고위험작업	해 당 작 업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시기통보여부	<input type="checkbox"/> 확인 15일 전까지 <input type="checkbox"/> 확인 전 15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미 통보	
차 기 확 인 예 정 대형사고위험작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예정일: <u>정월 여미</u>

※ 상기 차기 확인 예정인 대형사고 위험작업 진행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작업 15일 전까지 반드시일정을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장 담 당 자	직책 및 성명 : 안전관리자(대리) 김종주	
	휴대폰 : 010-3321-8786	E-mail : jongju.kim@sfa.co.kr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직책, 성명, 휴대폰, E-mail 주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연락,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보건정보 송부
3.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거 3년간 보존 후 폐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보건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방으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공단 확인자: 정미진 (서명) 사업장 입회자: 김종주 (서명)

※ 확인결과 등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

가. 현황 및 점검사항

안전조직원	직책	성명	선임일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정중식	'21. 12. 22.	<input type="checkbox"/> 이수(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안전관리자	김종주	'21. 12. 2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수(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i>22.5.21(2회)</i>
	보건관리자	-	-	<input type="checkbox"/> 이수(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수.인계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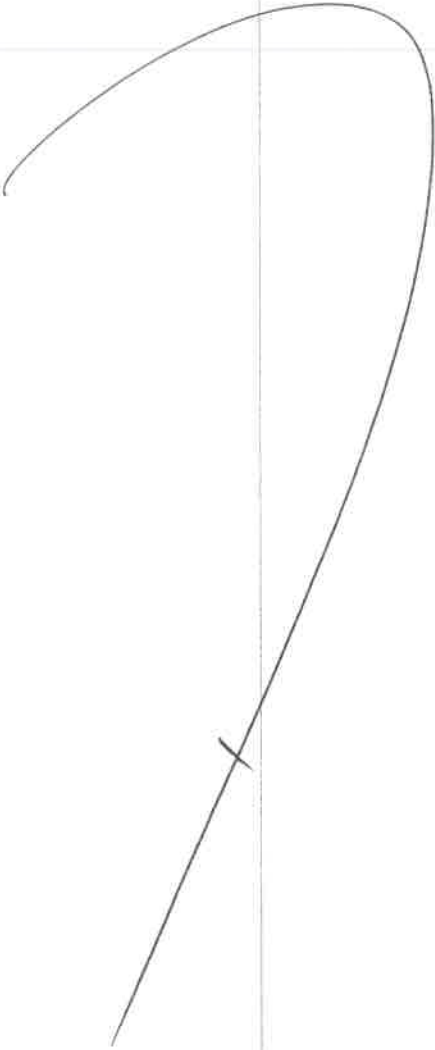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수.인계하고 심사결과 통지 시 첨부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안전관리비	149,895,900 원	계상실행	좌동
	사용금액 (22.7.13현재)	111,538,263 원 (사용률 : 78 %)	사용항목 적정여부	적정
주요 건설기계 관리	안전인증	타워 크레인 실시: 7대 미실시: 7대	리프트 실시: 7대 미실시: 7대	곤돌라 실시: 7대 미실시: 7대
	안전검사	타워 크레인 실시: 7대 미실시: 7대	리프트 실시: 7대 미실시: 7대	곤돌라 실시: 7대 미실시: 7대
기타	기타 관리적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교육,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 회의 (22.7.19, 04부) 실시 중 · 항동 안전점검 (22.6.23, 27개소에 1회) 실시 중 		

나. 지적사항

지적사항	개선사항
7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실태

위치 및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사항	계획서 출처 (Page 등)
	<p>※ 현장 중대 위험 증으로 25년 1월 15일 대체적으로 정정된 상태임.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창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p> 		

※ 계획서 출처는 주요 가설구조물(시행령 제58조의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관련 지적인 경우에 한해 기재
 - 시행령 제58조의1 : 높이31m↑ 비계, 작업발판일체형거푸집, 6m↑ 거푸집동바리, 터널지보공, 높이2m↑ 흙막이지보공, 동력을 이용한 가설구조물

IV. 향후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향후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p>○ 사원선, 잔간기 등 증공 준비</p>	<p>1. 사원선 등 객상복 작업시 단복 안전벨트 미설치, 수직수평로 등 안전띠 부착설비 미설치로 르자 추락재해 위험 등</p>	<p>1. 객상복 작업시 단복 안전벨트 설치 또는 안전띠 부착설비 설치. 착용자 2. 수직사다리 수직수평로 (유지수용 영구로 설치 또는 임시로 설치) 설치 및 착용자 등 준수바탕설치 3. 이동식 사다리 안전트라이 설치 등 관호방지장치 및 안전띠 부착설비 설치 착용자 등 준수바탕설치. (그랜저사양 등) 4. 경베이어 구동부 방호장치 설치 5. 사원선 기동 관계사 이 코드 등</p>
	<p>2. 하대, 폭발, 화재 위험환경</p>	<p>2-1. 용접, 용단 등 화재·폭발 위험시 가연성, 인화성물질 제거 또는 이격 및 분리방호장치 등 부착·배치 2-2. 화재·폭발 위험시 작업차이제거 및 화재감지차 배치 2-3. 임시(2차)방화 (2차기. 2차. 2차 유도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2-4. 비상시 인화성물질 제거. 대피차 등 수검. 야행 2-5. 화재 위험시 운전상황 여하확인 (운. 2차. 2차) 준수 철저 2-6. 화재 위험시 설치 2-7. 사명성 리스크 2-8. 폭발 위험. 수직 배관시 화재·폭발 ※ 열 관내 연소성 사안 2차 배관</p>
<p>※ 기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준수하기 바랍니다.</p>		

[중요] 계획서 현장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진행여부 및 이행자료(사진 등) 확인예정이니
계획서에 따른 사망다발 작업별 안전조치 이행 사진 등을 현장에 반드시 비치 바랍니다.

휴일 안전관리 대책

● 휴일 현장 관리감독 철저

- ▶ 휴일 관리감독자의 부재로 기술적 검토 및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기술적 검토 없이 작업자 임의로 진행 중 사고발생

-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은 휴일 작업 사양

- ※ 층고가 높은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T/C 설치, 해체작업 등

- 관리감독자(공사 과.부장) 또는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지휘

● 휴일 현장 작업관리 강화

- ▶ 주 5일제 근무분위기 속에서 토, 일요일 작업 시 근로의욕 저하 및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사고발생

- 고소작업 및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은 휴일작업 사양

- 휴일 작업공종의 관리감독자는 현장 관리감독 철저

- ▶ 안전한 작업방법 기피, 작업절차 생략 및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대형사고 발생

- 해당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대책 수립

-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시간, 인원 등) 적정성 여부 사전검토

● 월요일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 등 안전 활동 강화

- ▶ 일요일 휴식 및 여가활동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완상태에서 월요일 작업투입 시 사고발생 우려

-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통해 적당한 긴장감조성

- 월요일 근로자 건강체크 및 TBM 등 안전 활동 강화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내용 이력관리 운영 안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업무 지침 개정(2018.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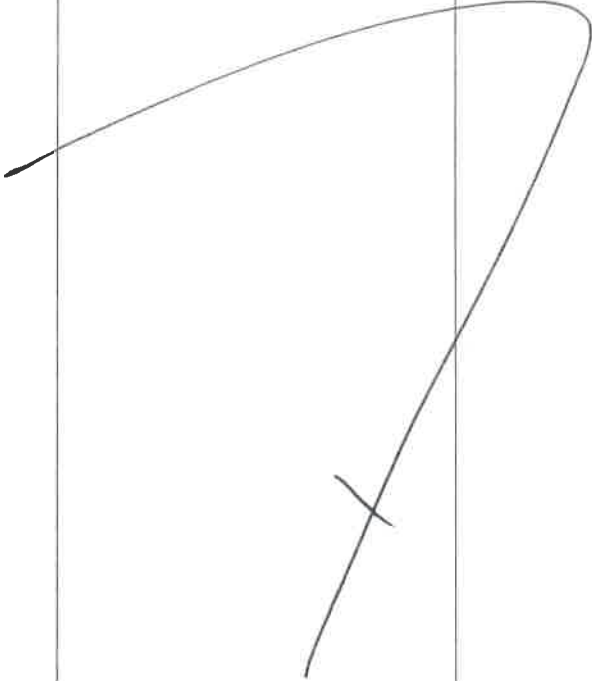
□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확인방법 변경

- 당초 : 공단에 변경 내용 검토 요청 및 검토의견 송부
- 변경 : 사업장에서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이력 관리 공단은 확인시
변경내용의 이력 관리 여부와 변경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검토

참고) **별지 제 14호 서식***「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

⇒ 사업장 보관용 계획서의 표지 뒷면에 부착 또는 계획서 속지 맨 앞에 철하여
계획서 변경 이력을 관리

심사대상 이외 위험작업공종 기술지원 결과서

위치 및 세부작업	재해위험요인	안전대책
		

※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이행 안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37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서 대상 현장 중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서 32명이 발생(86.5%)하였고, 공공발주현장 대비 사망 감소폭이 적어* 하반기에도 사망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공공 77.8% 감소, 민간 11.1% 감소)

이에 하반기부터 고용부와 공단은 사고사망 감축을 위하여 계획서 확인 결과 불량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과태료 등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발주자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시공사의 노력과 더불어 안전보건대장과 계획서 이행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원활한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법령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고 자율적인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발주자 법적 조치 의무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요 및 발주자 의무

▶ **【작성대상 및 절차】**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산안법 제67조)로, '20.1.16.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 **【발주자 의무】**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②)

↳ **【확인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

□ 계획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요청사항

계획서 관련 주요 확인사항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② 계획서 주요 작성내용과 실제공사의 부합 여부
- ③ 공법 및 작업방법 주요내용 변경 시 계획서에 보완 후 작업 여부 등

※ 상기 내용을 마일링 상태로 작업 시 사업장은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혹은 고용부 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법 제43조)

○ 공단에서는 착공 전 계획서 ①심사 후 결과통지서를 발주자에 발송(최초 1회)하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6개월 1회이상)하여 ②확인결과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내용을 확인 후 시공사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한 확인 당부드립니다.